

#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의안 번호	<b>325</b>
----------	------------

제출년월일 : 2008. 07.

제 안 자 : 속 초 시 장

**1. 주 문 : 시유재산(임야) 처분에 따른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함**

**2.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 개발사업부지 매각

가. 사업현황

- 사업위치 : 속초시 대포동 537-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7,049㎡
- 시행업체 : 속초시 교동 895-2 (주)글로벌심층수 대표 노준건
- 사업내용

단계별	사업내용
1단계 (취수계획량 : 15,000ton/일)	수산물보세창고 운영, 담수화(생수)사업, 소금·농축액 생산판매, 해양심층수 및 얼음 판매, 단기축양사업, 저온창고 운영사업, 수입수산물(선어) 유통
2단계	수산물가공사업, 한해성어류(킹크랩, 대게, 북방조개 등) 수입유통, 헬스 케어를 위한 테라소테라피아 사업

나. 사유재산(임야) 매각 대상부지 현황

지 번	지목	지적(m <sup>2</sup> )	공시지가 (원/m <sup>2</sup> )	추정가격 (원)	비 고
대포동 537-7	임야	8,064	33,700	271,756,800	사업부지

다. 그 간의 추진상황

- 1) 사업부지내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 '07. 10. 15
- 2) 업무협약서(MOU) 체결 : '07. 10. 22
- 3) 사업대상 매입부지 측량 : '07. 12. 6
- 4) 매입부지내 분묘개장 공고(속초시공고 제2007-474호) : '07. 12. 26
- 5) 해양심층수 개발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속초시) : '08. 1. 17
- 6) 매입부지의 공부상 등록전환 및 분할등록 : '08. 1. 28
- 7) 속초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신청서 제출(국토해양부) : '08. 2. 25
- 8)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취득(국토해양부) : '08. 5. 22

라. 매각관련 검토

1) 관 련 법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잡종재산의 매각)</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8호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u></p>
---

## 2) 매각관련 근거

### ○ 2007년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MOU)”

- 제4조(사전 준수사항)의 1. 속초시는 시행업체와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면적(사업 제안서상 계획면적)을 제공한다.
- 제7조(상시종업원 유지). 시행업체는 당초 계획한 사업의 시설물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에 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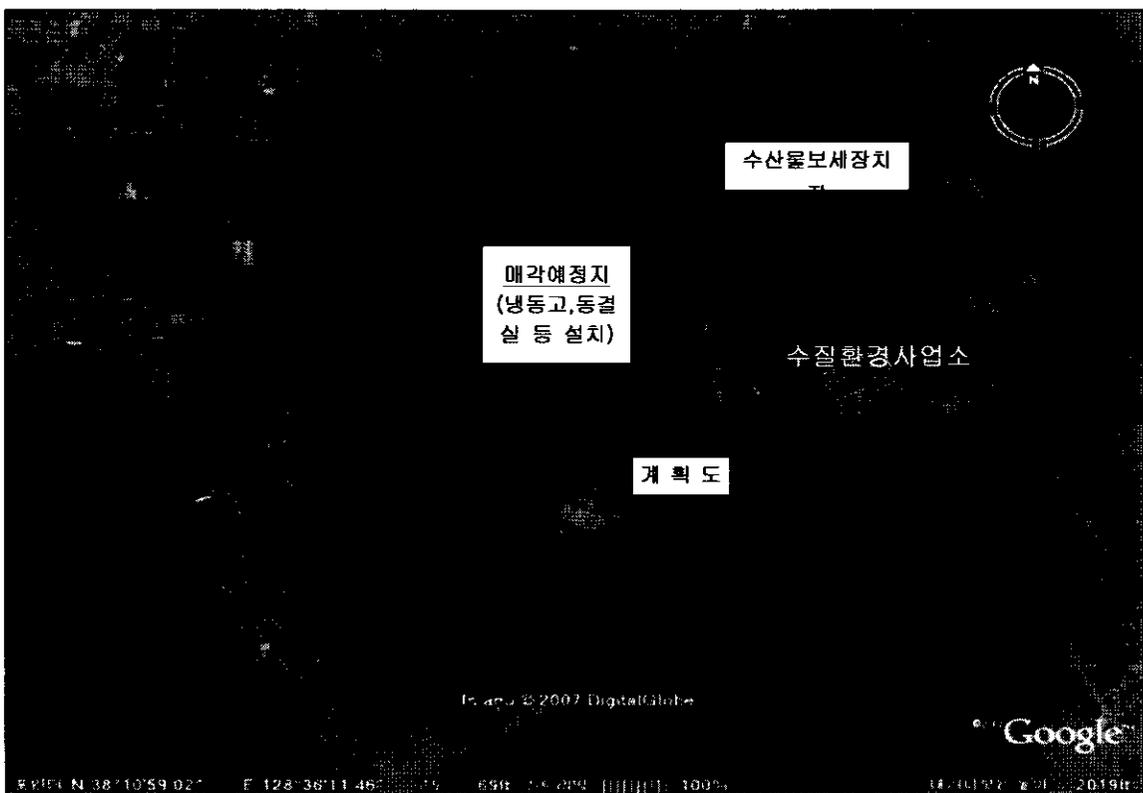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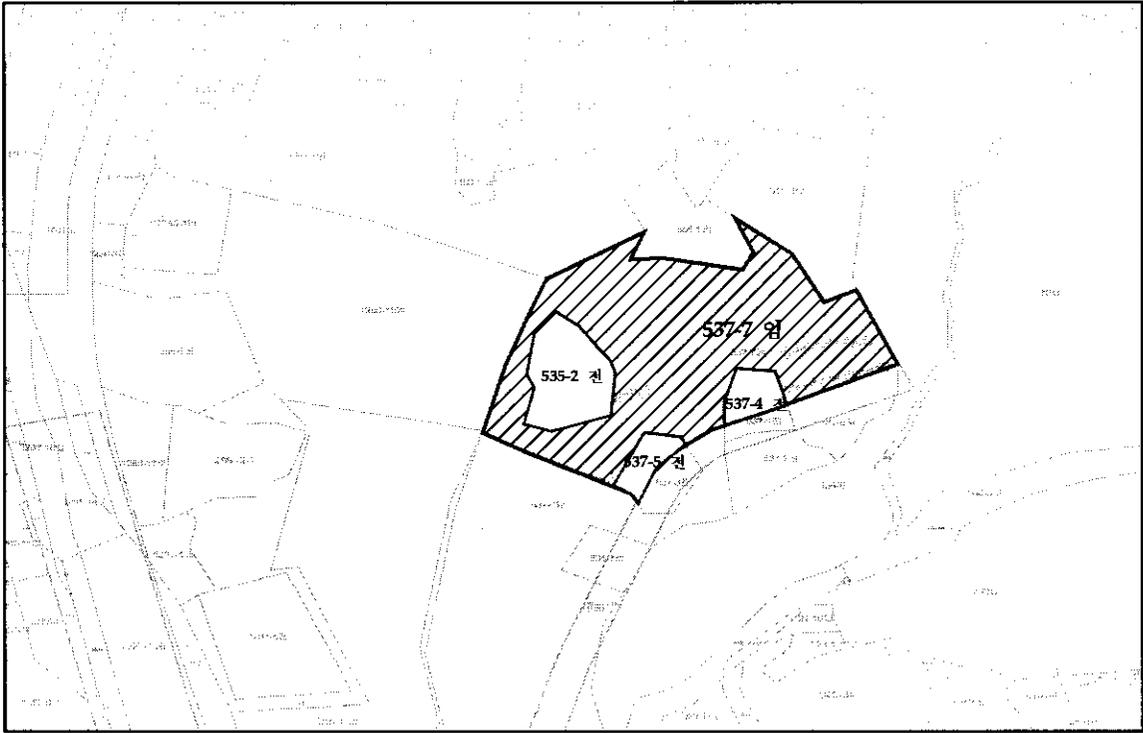
### ○ “(주)글로벌심층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고용계획

- 고용인원 : 59명(대표이사 1, 총괄임원 1, 업무팀 6, 운영팀 21, 생산팀 15, 영업팀 11, 경비팀 4)
- 고용계획인원 59명 중 대표이사 및 총괄임원을 제외한 전 부서에 90%이상의 인원을 주민등록상 및 실질거주지가 속초인 자로 고용.
- 속초시 거주자인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채용시 60% 이상을 정규직원으로 채용.
-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기술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정적인 인원에 한하여 타 지역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로서 거주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반드시 속초시로 전입조치

## 3) 매각이행 조건

- 매각계약시 계약서 및 별도의 매도인(속초시)이 제시하는 고용조건을 명시한 공증확인각서 징구.
- 매각계약 후 사업의 미착수 및 매각계약시 제시한 조건의 미이행, 사업 목적외의 토지사용 발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의거한 매각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하여 당해 재산에 발생한 손실액은 원인자 부담으로 함(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 청구)
- 매각계약체결시 일정기간 사업 미착수 및 철회시 환매특약조건을 계약서상 명시하여 사후 안정장치 마련.

# 【위치도 및 현지사진】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 회계명 :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2008년 (4차변경 금회)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3	51,369	2,096,470			
		건물	1	2,697.2	1,215,000			
		기타						
	매입	토지	3	51,369	2,096,470			
		건물	1	2,697.2	1,215,000			
		기타						
	교환 (신축)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8,064	271,756	1	8,064	271,756
		건물						
		기타						
	매각 (양여)	토지	1	8,064	271,756	1	8,064	271,756
		건물						
		기타						
	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 2008년도 제4차 관리계획재산 대상목록

(단위 : ㎡, 천원)

구 분	종류	재산의 표시				추 정 가 액	취득·처분 내 용	관련 부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수량			
매 각	토지	속초 대포동 537-7번지			8,064	271,756	해양침출수 개발 사업부지 매각	재난산림 관리과
매 각 (건 물)	건물							